

#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나라 스퀘시 종목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클럽선수,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연맹의 지도자·선수, 동호인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은 본 연맹의 스퀘시 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2. “지도자등록”은 본 연맹의 스퀘시 지도자로서 지도자 활동을 희망하여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16.)(개정 2016.5.19.)

3. “동호인등록”은 본 연맹의 동호인으로 동호인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5.19.)

4. “등록선수”는 본 연맹의 스퀘시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6.)(개정 2016.5.19.)

5. “등록지도자”는 본 연맹의 스퀘시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1.16.)(개정 2016.5.19.)

6. “등록동호인”은 본 연맹에 동호인 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5.19.)

7. “신인선수”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본 연맹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06.8.11)(개정 2016.5.19.)

8. “선수활동”은 선수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스퀘시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5.19.)

9. “지도자활동”은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스퀘시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16.)(개정 2016.5.19.)

10. “동호인 활동”은 동호인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스퀘시 등록 동호인으로서 각종대회 및 강습 참가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5.19.)

11.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회원단체로 승인된 스퀘시 종목을 대표하는 유일 단체이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12. “체육 특기자”는 본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해당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 중인 사람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본 연맹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 받는다.(개정

06.8.11)(개정 2014.1.16)(개정 2016.5.19.)

13. “정책종목”은 교육기본법의 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의 종목을 말한다.(개정 2016.5.19.)

14. “유급학생선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이상 연속하여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07.5.24)(개정 2016.5.19.)

15. “재수학생”은 각급 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 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5.19.)

16. “등록변경”은 본 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된 사람이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5.19.)

17. “이적 동의서”는 본 연맹의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개정 2016.5.19.)

18. “클럽선수”는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본 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개정 06.8.11)(개정 2016.5.19.)

19. “동호인 선수”는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5.19.)

20. “동호인”은 성인이 스쿼시 종목을 희망하여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5.19.)

21. “청소년 동호인”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스쿼시종목을 희망하여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동호인부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5.19.)

22. “지도자·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은 지도자·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 제3조(규정제정)

①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규정을 준용하여 스쿼시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본 연맹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7.5.24)(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② 제1항에 따른 본 연맹의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지도자나 선수·동호인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의 시정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본 연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4.1.16.)(개정 2016.5.19.)

#### 제4조(적용범위)

① 본 연맹에 등록된 지도자·선수·동호인과의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신설 06.8.11)(개정 2016.5.19.)

③ 외국 국적자의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에 대하여는 국제연맹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대한체육회가 인정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5.19.)

## 제 2 장 지도자. 선수 및 동호인 등록

#### 제5조(선수등록)

①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부(실업팀) 및 제8조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록을 한다.(개정 06.8.11)(개정 2014.1.16.)(개정 2016.5.19)

#### 제6조(지도자등록) (신설 2014.1.16.)(개정 2014.8.21.)(개정 2016.5.19.)

①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지도자는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일반부(실업팀)소속으로 지도자등록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8.21.)(개정 2016.5.19.)(개정 2016.6.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기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수 없다.

③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신설 2014.8.21)

#### **제7조(동호인등록) (신설 2016.5.19.)**

① 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연맹의 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연맹 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제8 조(선수등록의 예외) (신설 2008.5.7)**

① 고등학교 재학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재직중에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사람은 본 연맹의 결정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등록한 사람은 대학 소속으로 등록변경을 할수 없다. 다만 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제17조 제2항 7호에 의한다.(개정 2016.5.19.)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등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직장운동부 소속에 한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 체육회 (근로소득 지급,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제9조(선수등록구분)**

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 연령(단, 연령 기준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본 연맹은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07.5.24)(개정 2016.5.19.)

1. 초등부(만 13세 이하)
2. 중학부(만 16세 이하)

3. 고등부(만 19세 이하)
4. 대학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

②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개정 07.5.24)(개정 2016.5.19.)

③ 유급선수 및 연령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제1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5.19.)

**제10조(연령초과 선수의 등록)** 제9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본 연맹 시·도지부에 등록 신청서 제출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5.19.)

#### 제11조(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 동호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06.8.11)(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②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의 등록은 9월 30일 까지로 한다.(개정 06.8.11)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선수까지 유효하다. (개정 2014.1.16)

④ 지도자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지도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된 지도자까지 유효하다.(신설 2014.1.16.)

#### 제12조(선수등록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개정 2016.5.19.)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 사람(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개정 2016.5.19.)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대학원 재학생 포함) (개정 2016.5.19.)

4. 본 연맹이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사람(개정

2016.5.19.)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동호인선수·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06.8.11)(개정 2016.5.19.)

1.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사람(개정 2016.5.19.)

2. 동호인선수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사람 (개정 06.8.11)(개정 2016.5.19.)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수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매년 초등부,중등부 50,000원으로 하고 고등부,대학부,일반부 200,000원으로 한다. 단 동호인은 스쿼시 저변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선수등록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6.9.22.)

④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선수등록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9.22.)

### 제13조(지원서의 관리)

①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실업팀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 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없다.(개정 2014.1.16.) (개정 2016.5.19.)

②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연맹이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1명당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개정 2009.9.15.)(개정 2014.1.16.)(개정 2016.5.19.)(개정 2016.6.17.)

③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④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 추천서 사본을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맹은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 제14조(선수등록 자격의 제한)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당해 학

교급의 최종학년도 졸업(자퇴) 이후로 정한다.(개정 07.5.24)

② 학교팀의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 또는 동일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휴학중인 사람과 해외유학생은 해당 기간동안 해당 학교급 또는 일반부 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 (개정06.8.11)(개정 08.12.17)(개정 2016.5.19.)

④ 군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공익근무요원은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소속선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9.)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8조 1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인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 연맹이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⑦ 동일인이 제9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종목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본 연맹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종 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개정06.8.11) (개정 07.5.24) (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⑧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규정과 본 연맹의 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07.5.24)(개정 2016.5.19.)

#### 제15조(등록절차)

① 체육회가 운영하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등록 절차를 시행하여 시도체육회는 본 연맹 시도지부 및 시·군·구 체육회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6.8.11)(개정 2014.1.16)(개정 2016.5.19.)

1.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에서 동호인은 본 연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2006.8.11)(개정 2014.1.16)(개정 2016.5.19.)

2.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도자·선수,동호인 카드를 포함한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3. 본 연맹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체육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보고한다.(개정 2016.5.19.)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본 연맹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6.5.19.)

5.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에 확인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②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선수, 동호인은 등록 지도자·선수,동호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③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지도자·선수·동호인은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④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 마감일로부터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⑤ 등록 지도자·선수, 동호인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국가대표정보 등을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체육회 내규에 따른다.(신설 2008.12.17)(개정 2014.1.16)(개정 2016.5.19.)

#### 제16조(등록지)

① 지도자·선수, 동호인 등록은 해당 지도자, 선수, 동호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 연맹 시도지부 및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② 학교팀에서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개인종목은 행정구역 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단체전 경우는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한다.(개정 2014.1.16.)(개정 2016.5.19.)

③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 (신설 06.8.11)

#### 제17조(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06.8.11)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의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인한 사람(개정 2016.5.19.)

3. 군 입대 및 제대후 원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만료의 경우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 되어야 하나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변경 까지는 전 소속단체 소속으로 한다.(개정 2016.5.19.)

7. 야간대학선수의 경우 재학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선수가 재직중 야간대학선수로 이적은 1회에 한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신설 06.8.11)(개정 2016.5.19.)

③ 동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5.24)(개정 2016.5.19.)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 할 수 있다.(신설 06.8.11)(개정 2016.5.19.)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 연맹은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 등록 시정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 **제3장 지도자. 선수. 동호인 활동**

### **제19조 (지도자활동의 자격)(신설2014.1.16)**

① 본연맹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스퀘시 종목의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 지도자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지도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5.19.)

### **제20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연맹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스퀘시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5.19.)

### **제21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 연맹이 정하는 대회별 참가 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단,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사람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③ 선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 또는 본 연맹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소 만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07.5.24)(개정 2016.5.19.)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 순수 아마투어 이념과 위배되는 단체 가입선수나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대회 참가도 불가하다.

⑥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 연맹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개정 2016.5.19.)

⑦ 제15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본 연맹의 최종 등록이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신설 08.12.17)(개정14.1.16)(2016.5.19.)

## 제22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5.19.)

1. 소속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그 연도에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사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사람.(개정 06.8.11)(개정 2016.5.19.)

2.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사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사람.(개정 06.8.11)(개정 2016.5.19.)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거나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08.12.17.)(개정2016.5.19.) (개정 2014.1.16.)(개정 2016.6.17.)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06.8.11)(개정 2016.5.19.)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으로서 당해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5.19.)

2.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본 연맹이 정한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단, 본 연맹이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개정 06.8.11)(개정 2016.5.19.)

③ 학생선수 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5.19.)

1.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으로 입원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2016.5.19.)

2. 소속단체의 해체 (신설 06.8.11)

3.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

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사람. (단, 본 연맹이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개정 06.8.11)(개정 2016.5.19.)

4.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소속의 복귀 시 본 연맹이 정한 선수등록 기한 내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 (신설 06.8.11)(개정 2016.5.19.)

**제23조(선수 실적발급)** 선수 실적발급은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에 따른다.(신설 2014.1.16)

## 제 4 장 징 계 조 치

### 제24조(제한조치)

① 대한체육회 또는 본 연맹에서 정한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선수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등호인 포함) 금지(보호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6.5.19.)

2. 관련된 임직원(단장,감독,코치 포함)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본 연맹 활동 자격 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의뢰 (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개정 06.8.11)

② 징계 만료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본 연맹은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 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 코자 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 06.8.11)(개정 2016.5.19.)

④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그 자격을 정지한다.(2016.5.19.)

### 제25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본 연맹은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등을 결정하여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6.5.19.)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 제 5 장 부 칙

### 제26조(경과사항 및 시행일)

① 200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선수자격심의위원회” 규정과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을 통합한 “선수등록규정” 개정으로 폐지하며 본 연맹 “선수등록 규정” 을 신설하여 이사회 의결로 승인된 2005년 1월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06.5.16)로써 지침을 받아 개정하며 본 연맹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06.8.11)로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07.5.3)로써 지침을 받아 개정하며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07.5.24)로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08.1.29),(08.4.25)로써 지침을 받아 개정하며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08.12.17)로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규정(2장 선수보호위원회 삭제,조항변경)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09.7.21)로써 지침을 받아 개정하며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10.1.6)로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2013.12.17)로써 지침을 받아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14.1.16)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2014.7.15)로써 지침을 받아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14.8.21.)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지침을 받아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16.5.19.)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지침을 받아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16.6.17.)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규정은 대한체육회 지침을 받아 본 연맹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16.9.22)부터 시행한다.